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4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6. 13.

발의자 : 정성호 · 김남희 · 김성환
김영진 · 김정호 · 문진석
박은정 · 박정 · 안규백
안태준 · 윤후덕 · 임미애
정준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
급여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하지 않음.

2024년 1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.7명대를 기록하여 역대 최
저수준인 상황임. 이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2750년 국가 소멸 위
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.

대한민국의 양육비는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2
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양육비는 97.6만원으로 평
균 가구소득 대비 19.3% 수준으로 부모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.

이에 출산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여
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하기 위함(안 제12조제3호며 목).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호머목 중 “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(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)”를 “출산이나”로, “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”을 “지급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”로 하고, 같은 목에 1) 및 2)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)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
- 2) 6세 이하(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)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비과세소득)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 1. · 2. (생 략) 3.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. ~ 러. (생 략) 머. <u>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(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)</u>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급액	제12조(비과세소득) -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가. ~ 러. (현행과 같음) 머. <u>출산이나</u> ----- ----- <u>지급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</u>
<신 설>	1) <u>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급여</u>
<신 설>	2) <u>6세 이하(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)</u>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

	<u>는 급여로서 월 20만원</u> <u>이내의 금액</u>
벼. ~ 저. (생 약)	벼. ~ 저. (현행과 같음)
4. • 5. (생 약)	4. • 5. (현행과 같음)